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0,207,748	10,506,232
일반회계	278,667,460	8,360,024
특별회계	71,540,288	2,146,209
공기업특별회계	30,690,554	920,71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0,690,554	920,717
기타특별회계	40,849,734	1,225,492
수질개선 특별회계	27,331,333	819,940
주택사업 특별회계	6,839,769	205,193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50,792	25,524
자활기금 특별회계	1,696,652	50,90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601,627	78,04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71,480	26,14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38,411	13, 152
기반시설 특별회계	30,979	9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88,691	5,661

-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와 같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0,924천원으로 한다.
-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지방채무 차입 한도액은 2,9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